

「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」(국토교통부고시 제2021-916호)을 개정함에 있어,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11월 3일  
국토교통부장관

## 「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」 일부개정안 행정예고

### 1. 개정이유

‘24년부터 시설물유지관리업이 폐지됨에 따라, 시공능력평가 공시 및 실적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위탁기관을 조정하고, 업종별로 운영 중인 실적신고 시스템을 통합하고 위탁업무인 실적신고 업무 처리의 고도화를 위해 우리부가 개선사항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

### 2. 주요내용

#### 가. 실적신고 및 시공능력평가 업무 위탁기관 조정

- 신축, 유지보수공사 여부에 관계없이 종합공사는 대한건설협회, 전문공사는 대한전문건설협회, 기계설비·가스공사업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서 실적신고 및 시평업무를 담당하도록 조정

나. 통합된 시스템을 통해 실적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, 필요 시 우리부가 개선사항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

### 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(건설정책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행정예고문 관련 자료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(<http://www.molit.go.kr>→정책자료→법령정보→입법예고·행정예고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#### 가. 의견서 제출

- 의견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개 정 안	수 정 안	의 견

#### 나.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(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
- 전자우편 : lee1003@korea.kr
- 팩스 : 044-201-5546

### 3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(전화 044-201-3616, 팩스 044-201-5546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